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0가합565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사공대, 오태진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B에게 201,859,889원, 원고 A에게 501,234,5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복합시설 신축사업 추진 등

1) F은 2003. 6. 26.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 지분을 상속받은 후 2012. 12. 14.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상속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소유하여 온 사람이다.

2)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G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H 복합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3) F은 2014. 1. 20. 세종시로부터 위 복합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3. 2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4. 12. 12. I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I은 위 복합시설의 지하 2층 부분을 건축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4) I은 2015. 12. 7.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377호로 기성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F은 I에게 4,145,499,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면서 이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F은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8. 8. 8. 담보로 4,2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대전고등법원 2018카정120호)을 하였다. F은 위 결정에 따라 2019. 5. 21.

4,2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2019년금제3480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6) 한편, 항소심 법원은 2020. 1. 15. F은 I에게 기성 공사대금에서 선지급한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공제하고, 하자보수비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기성 공사대금 채권 2,433,499,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5. 28.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2018. 10. 29. J(개명 전 성명 : K)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J의 남편인 F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F, J과 사이에 위 차용금의 2배인 10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2호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 B는 2018. 10. 29. J, F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 J과 사이에 위 차용금의 2배인 30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8호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 A는 2019. 5. 1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2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 K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G, F, J과 사이에 80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다. F의 L 등에 대한 채무

1) F은 2019. 5. 2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하고, 이하 위 3개 회사를 ‘L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5,20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9. 6.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G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L 등은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2019. 5. 21. O의 계좌에 위 대여금을 입금하였다.

3) F은 2019. 5. 20. 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등에게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합계 채권최고액 7,540,000,000원).

-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2019. 5. 22. 접수 제28002호, 채권최고액 3,510,000,000원)

-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2019. 5. 22. 접수 제28002호,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 N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2019. 5. 22. 접수 제28002호,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L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M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N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2019. 7.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2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000,000원은 2019. 7. 29.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계약금 5,200,000,000원은 2019. 5. 21.자 계약대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건1) 을 말소를 위해 F과 O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한 O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3. 계약 대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금 5,000,000,000원은 잔금으로 대체한다.

- 2014. 8. 25. 접수 제38177호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P조합

- 2014. 8. 25. 접수 제38177호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Q조합

- 2014. 8. 25. 접수 제38177호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권자 R조합

4. 계약대상 토지에 설정된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가압류 결정(2015카단52575) 채권자 I

청구금액 4,145,499,390원 및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S)은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3) F은 2019. 8.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들의 대위변제 등

1) 피고들은 2020. 11. 11.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P조합, Q조합, R조합(이하 ‘P조합 등’이라 한다)에 2014. 8. 25.자로 접수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5,533,494,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들은 2020. 11. 11. I에 F의 채무 3,435,729,6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I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표 작성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대전지방법원 T,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위 배당절차에서 2021. 3. 12.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4,216,210,741원을 원고 B에게 93,044,929원, 원고 A에게 117,856,910원(= 31,014,976원 + 86,841,934원), L에게 1,302,629,009원, N에게 434,322,068원, U에게 169,083,854원, V에게 417,529,561원, W에게 380,981,172원, X에게 310,149,764원, I에게 990,613,4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 31 내지 34호증, 을 제1, 3 내지 8, 11 내지 1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의 나.항에서 본 원고들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 A의 F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F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가) 적극재산(15,769,220,000원)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11,569,220,000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6. 29.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1,569,220,000원인 사실, 다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는 건축 중 장기간 중단된 지하구조물인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2) 이 소재하는 사실, 이 사건 구조물은 지하 1층 및 지하 2층 공사 중 중단된 것으로 합계 건축면적 4,647.75㎡(지하 2층 바닥면적 2,292.04㎡, 지하 1층 바닥면적 2,355.71㎡)인 사실, 감정인은 지하구조물로 제한받는 토지의 가액은 7,684,26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구조물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11,569,22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액에 이 사건 구조물의 가액인 3,650,000,000원을 합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구조물을 고려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의 가액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 : 4,200,000,000원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0,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인 점,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F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3) 으로 공탁의 원인이 소멸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위 채권자들에게 동순위로 배당을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담보취소결정을 조건으로 하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F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극재산(19,481,968,325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2 내지 25호증, 을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 528,078,902원 외에도 아래와 같이 I에 대한 채무 3,065,543,104원, P조합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00원,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5,368,580,645원, N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 1,400,000,000원, 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채무 4,119,765,674원 등 총 19,481,968,325원이 있었다.

(1) 원고들에 대한 채무 : 528,078,902원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2018. 10. 29.자 대여금 채무원리금 176,531,506원(=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9.부터 2019. 7. 2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4))이고, 원고 A에 대한 채무는 2018. 10. 29.자 대여금 채무원리금 58,843,835원(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9.부터 2019. 7. 2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5)) 및 2019. 5. 17.자 대여금 채무원리금

292,703,561원(대여금 280,000,000원에 대한 2019. 5. 17.부터 2019. 7. 2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6)) 합계 351,547,396원이 된다.

(2) I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 3,065,543,104원

앞서 본 I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 채무는 계산상

3,065,543,104원이다(2,433,499,85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7.부터 2019. 7. 2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7))

(3) P조합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 5,000,00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매쳐져 있던 근저당권자인 P조합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500,000,000원, Q조합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500,000,000원, R조합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 3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4) L 등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 : 6,768,580,645원

F이 2019. 5. 20. L 등으로부터 5,20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L 등에 대한 채무액은 5,368,580,645원이다(5,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7. 24.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8))

또한 G는 2019. 6. 1. Y 주식회사와 업무용역비를 600,000,000원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 및 2019. 6. 3. N과 사이에 업무용역비를 800,000,000원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F은 2019. 5. 11. N에게 1,4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압류명령 등이 신청된 W, V, U, X에 대한 채무 : 4,119,765,674원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W	1,228,378,082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0363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V	1,346,219,178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0364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U	545,168,414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0299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X	1,000,000,000	대전지방법원 2010카단60637 채권가압류 결정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 내지 25, 28 내지 32,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1,569,22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0,200,000,000원보다 약 10% 이상 높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공사가 중단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구조물이 존재하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나대지 상태의 가격대로 매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매절차에서의 감정인은 건축허가 상세내용 및 건축주 등 관계자변경 및 인계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경매진행 및 참여시 각별히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경우 위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P조합 등의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 L 등의 채권최고액 7,5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였다. 한편, P조합 등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000,000원이고, L 등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L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5,368,580,645원 외에 N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무 1,400,000,000원도 합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에는 I이 청구채권 4,145,499,370원의 가압류 등기(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2575호)를 마쳐 놓았고, 대전지방법원 S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고, 가압류등기나 강제집행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할 책임은 F에게 있었으나 실제로 F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초과에 있어 피고들로서는 F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위변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였다(실제로 피고들은 2020. 11. 11. I에 F의 채무 3,435,729,6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④ L 등이 2019. 5. 20. F에게 5,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은 O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O이 실제로 F의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가압류 등은 위 I의 가압류 등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모두 말소되었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P조합 등의 채무 및 L 등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L 등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나, L 등이 실제로 F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던 이상 L 등에 대한 변제도 정당한 변제라고 할 것이다(한편 L, N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L는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고,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토지는 O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O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들로서는
이외에 다른 채권자인 원고 등의 존재 여부를 쉽게 알기는 어려운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과 통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남해인, 판사 신유리

별지

목록

1. 세종특별자치시		대 1160㎡
2. 세종특별자치시		답 1178㎡
3. 세종특별자치시		답 1㎡
4. 세종특별자치시		답 39㎡
5. 세종특별자치시		대 657㎡
6. 세종특별자치시		대 19㎡
7. 위 1, 2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		

- 1) 제한물권의 오타로 보인다.
- 2) 감정평가표에 제시외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F 등은 2020. 6. 4.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1.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대전고등법원 2020카담106호)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 4) $26,531,506\text{원} [= 150,000,000\text{원} \times 0.24 \times (269/365\text{일})]$
- 5) $8,843,835\text{원} [= 50,000,000\text{원} \times 0.24 \times (269/365\text{일})]$
- 6) $12,703,561\text{원} [= 280,000,000\text{원} \times 0.24 \times (69/365\text{일})]$
- 7) $632.043,249\text{원} [= 2,433,499,855\text{원} \times 0.06 \times (4\text{년} + 120/365\text{일}), \text{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 8) $168,580,645\text{원} [= 5,200,000,000\text{원} \times 0.015 \times (2\text{개월} + 5/31\text{일})]$